



##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(약칭: 취업제한규칙)

[시행 2022. 2. 18.] [고용노동부령 제347호, 2022. 2. 17., 타법개정]

고용노동부 (산업보건과) 044-202-7739

고용노동부 (산업안전과) 044-202-7733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 12. 26.>

[전문개정 2011. 3. 16.]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「산업안전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1. 7. 6.>

[전문개정 2011. 3. 16.]

**제3조(자격·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)** 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·면허·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9. 12. 26.>

②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,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9. 12. 26.>

[전문개정 2011. 3. 16.]

**제4조(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)**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자격·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은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과 「민법」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인력,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에 따른 시설·장비를 갖춘 기관 중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(이하 “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”이라 한다)의 지정을 받은 기관(이하 “지정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<개정 2019. 1. 31., 2019. 12. 26.>

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인력 수급(需給)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3. 16.]

**제5조(지정 신청 등)** ①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정관
2. 별표 1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3.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)와 시설·설비 명세서
4. 최초 1년간의 교육계획서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

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
2. 건물등기부 등본

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⑤ 지정교육기관은 보유 인력·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·시설 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,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3. 16.]

**제6조(지정서의 반납)**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26.>

[전문개정 2011. 3. 16.]

**제6조의2** 삭제 <2011. 3. 16.>

**제7조(교육 내용 및 기간 등)** 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(이하 “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에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능을 습득하려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교육 내용 및 기간(시간)을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26.>

[전문개정 2011. 3. 16.]

**제8조(교육방법 등)** ① 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과과목을 편성하고, 교과과목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26.>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 1명당 교육 인원은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30명 이내, 실기교육의 경우에는 1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3. 16.]

**제9조(교육계획의 수립)** ① 교육기관은 매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육 일시 및 장소
2.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인원
3. 교육수수료
4. 강사(학력 및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)
5. 수료시험에 관한 사항(시험위원회 구성, 출제 및 채점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)

[전문개정 2011. 3. 16.]

**제10조(등록)**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 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26.>

[전문개정 2011. 3. 16.]

**제11조(수료증 등의 발급)** ① 교육기관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에 관하여 정해진 교육을 이수(정해진 교육시간의 10분의 9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)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26.>

② 제1항에 따른 수료시험은 교육 종료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,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1. 필기시험: 선택형 위주로 실시
2. 실기시험: 실험·실습 위주로 실시

③ 교육기관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기능의 습득에 관하여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능습득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 12. 26.>

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교육 수료증 또는 기능습득 교육이수증(이하 "수료증등"이라 한다)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수료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.

[전문개정 2011. 3. 16.]

**제12조(수료증등의 재발급)** ① 수료증등을 발급받은 사람이 수료증등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등 재발급신청서를 해당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수료증등을 재발급받아야 한다.

② 수료증등이 헐어서 못 쓰게 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수료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수료증등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린 수료증등을 되찾은 사람은 되찾은 수료증등을 지체 없이 해당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3. 16.]

**제13조삭제** <2011. 3. 16.>

**부칙** <제347호, 2022. 2. 17.> (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** ①부터 ⑤까지 생략

⑥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자격·면허·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·면허·경험 또는 기능(제3조제1항 관련)

| 작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작업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격·면허·기능 또는 경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서 규정하는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전기사업법」에서 규정하는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서 규정하는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서 규정하는 면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의2. 지게차[전동식으로 운전되는 리프트타이어를 부착한 것으로(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)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]를 사용하는 작업 |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) 「국가기술훈련법」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<br>2)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전·결선(結線)·정화 및 불발장약(裝藥)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점검 및 처리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)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에서 규정하는 자격<br>2)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<br>3)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인화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·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.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업무<br>나.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업무 | 1) 「국가기술훈련법」에 따른 전기용접기능사, 특수용접기능사 및 가스용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(가스용접에 한정한다)<br>2) 「국가기술훈련법」에 따른 금속재료산업기사, 표면처리산업기사, 주조산업기사 및 금속제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<br>3)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폭발성·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    | 폭발문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폭발성·발화성·인화성 물질의 취급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)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에서 규정하는 자격<br>2)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<br>3)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방사선 취급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. 원자로 운전업무<br>나. 핵연료물질 취급·폐기업무<br>다.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·폐기업무<br>라.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·촬영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원자력법」에서 규정하는 면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(活線作業)             |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고압의 전로(電路)를 취급하는 업무로서<br>가. 정전작업(전로를 전개하여 그 지지물을 설치·해체·점검·수리 및 도장(塗裝)하는 작업)<br>나. 활선작업(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송전전로 또는 그 지지물을 설치·점검·수리 및 도장작업) |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기능사, 철도신호기능사 및 전기철도기능사 이상의 자격<br>2)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<br>3)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<br>4)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|
| 10.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    | 철골구조물 설치·해체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<br>2)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(높이 66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전보건규칙 제256조에 따른 위험물질등이 들어 있는 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공업배관기능사보 이상 및 건축배관기능사보 이상의 자격<br>2)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. 천장크레인 조종작업(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) |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2)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<br>3)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. 타워크레인 조종작업(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 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) |             |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.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(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)                  |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|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<br>2)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<br>3)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<br>4)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       |
| 14.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승강기기능사의 자격<br>2)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<br>3)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<br>4)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             |
| 15. 흙막이 지보공(支保工)의 조립 및 해체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또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<br>2)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(깊이 3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)<br>3)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<br>4)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6.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<br>2)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(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)<br>3)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<br>4)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|
| 17.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<br>2)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(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)<br>3)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<br>4)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|
| 18.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또는 스쿠버 잠수장비에 의해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 |  |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<br>2)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<br>3)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<br>4)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9. 롤러기를 사용하여 고무 또는 에보나이트 등 점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|  |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. 양화장치(揚貨裝置) 운전 작업(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) |  | 1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<br>2)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<br>3)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<br>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1. 타워크레인 설치(타워크레인<br>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.<br>이하 같다)·해체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1) 「국가기술훈련법」에 따른<br>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<br>능사의 자격<br>2)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<br>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<br>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<br>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<br>하는 사람<br>- 수료시험 합격 후 5년이 경<br>과하지 않은 사람<br>-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<br>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<br>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<br>사람 |
| 22. 이동식 크레인(카고크레인<br>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·고<br>소작업대(차량탑재형에 한<br>정한다. 이하 같다) 조종작<br>업 |  | 1) 「국가기술훈련법」에 따른<br>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<br>2)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<br>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<br>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비고

- 제21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작업 자격을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별표에 따른 교육(144시간)을 다시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.
- 2021년 7월 15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지게차 조종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호의2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.
  - 가.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(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)를 받은 사람
  - 나. 3개월 이상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

⑦ 및 ⑧ 생략

제3조 생략